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경로당 지원 조례안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58
----------	------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의의원 : 박주용 의원,

최재규 의원, 이연숙 의원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로당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경로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로당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의 설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경로당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경로당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스마트경로당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 방안

2. 시설 및 환경개선

3. 관련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스마트경로당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스마트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노인복지법」(2025. 4. 22. 일부개정, 2025. 10. 23. 시행)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1의2. “국가지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스마트도시기술”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5.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제어·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을 설치·건축·구축·정비·개량 및 공급·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6의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말한다.

7. “스마트도시산업”이란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8. “혁신성장진흥구역”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9.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

선하거나 신기술·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복합을 통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10. “스마트혁신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제공·이용하기 위하여 제49조에 따라 임시로 승인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

11. “스마트실증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하여 제50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12. 삭제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경로당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스마트경로당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4조제2항)
- 스마트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2021년 부천시가 최초 스마트경로당을 도입하면서 최근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을 통해 전국 14개 시·군에서 스마트경로당을 조성·추진중임
- 현재 스마트경로당과 관련한 별도의 조례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조례가 입법될 경우 전국 최초의 자치법규화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현 스마트경로당 사업과는 사업의 적용범위·시설도입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마다 경로당의 개소수가 상이하게 달라 현 시점 비용추계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판단됨

작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 성 군 의 회 의 원

성 명 (연 락 처)

박 주 용 (☎ 2292)